

고유명사의 범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Proper Names

박은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banggle1999@hanmail.net

Eun-Kyung Park, Dept. of Lib. and Info. Sc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

고유명사의 개념과 판별, 분류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모호했던 고유명사의 기본적인 범주를 분명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에서 고유명사를 색인 및 검색어로 처리할 때 고려 해야 할 점에 대해 논하였다.

1 서론

고유명사는 고유성을 가지고 무엇(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유명사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고유성’과 ‘무엇’이라는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유명사가 가진 ‘고유성’이란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상대적이며, 고유명사의 대상되는 ‘무엇’은 그 포함 범위가 넓고, 유동적이어서 고유명사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全文檢索이 이루어지는 자연어 처리 환경에서 보통명사만큼이나 색인 및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명사에 대해 망라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밝히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유명사의 개념과 그 판별에 대해 고찰하고, 국립국어연구원이 주관하는 21세기 세종계획 속의 고유명사 전자사전 구축부문에서 제시한 고유명사 분류표를 바탕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추가하여 고유명사의 범주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분석된 범주에 속하는 고유명사를 대상으로 색인과 검색 측면에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중 어느 쪽으로 취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고유명사

2.1 고유명사의 개념

명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가리키며, 사용범위에 따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뉜다(이관규 1999). 고유명사는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국립국어연구원 1999)이라 정의한다. 그러나 이는 협의의 정의이므로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많은 고유명사가 이 범주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족명, 신의 이름, 조직 및 단체명, 회의명, 사건명, 행사명, 지리명 등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고유명사의 의미를 ‘같은 종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특별히 일컫는 고유성이 있는 이름’이라면 모두 고유명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즉, 특정한 사물 및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직 및 단체와 정신적 산물이나 가상적 실체에까지 그 범주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구 혹은 명사절로 이루어진 서명이나 상품명도 고유명사의 범주

* 이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확장한 고유명사의 개념에 따르면 대상은 지칭하고 있는 ‘고유성’(특정성, 단일성이라고도 함)이 고유명사의 판별기준이다. 그러나 고유명사의 ‘고유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판별원칙이지만, 명확한 판별기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유명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차이점에 기반하여 고유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2 고유명사의 판별

고유명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것이 없고, 우리말에서는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처럼 대문자를 이용하여 고유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적 특징도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광의의 고유명사 개념을 바탕으로 고유명사를 판별하는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같은 종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특별히 일컬는 고유성이 있어야 하며, 하위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고유명사라 한다.

첫째, ‘고유성’은 일정한 영역의 실체로 고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유성을 원칙으로 고유명사를 판별하게 되면 협의의 고유명사 개념에서 말한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은 물론이고, 이 개념에서 제외되었던 조직 및 단체명, 회의명, 사건명, 지리명 등 고유성을 지닌 모든 종류의 이름들은 고유명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고유성’ 여부만으로 고유명사를 판별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다. 왜냐하면, 고유성만을 기준으로 하면 ‘해’, ‘달’과 같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가 아닌 예외가 발생하고, 보통명사인 ‘흑장미’가 단 한 송이만 존재하게 되

어 그 대상이 유일해진다 하여도 ‘흑장미’란 명칭은 고유명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김문오 2000).

둘째, 고유명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고유성과 더불어 하위개념의 존재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하위개념을 하나라도 존재하는 어휘는 보통명사이며, 하위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최종 하위개념이 고유명사가 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더 이상의 하위개념이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이지만, 미국인은 그 하위에 ‘한국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런데 이 기준 역시 최종 하위개념의 존재여부의 인식이 어렵다는 점과 ‘최종하위’라는 개념의 상대성이 문제가 된다.

특히, 대표적 고유명사중 하나인 동식물명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동식물의 명칭인 새, 고양이, 나무 등은 보통명사로 생각하고, 앵무새, 참새, 파랑새 등과 같이 외연이 극히 협소해진 동식물의 품종명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인정하여 고유명사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식물의 하위 품종명은 그 보다 상위의 동식물명에 비하면, 외연이 확실히 좁아지고 특정성이나 전문성이 분명히 증대되었지만, 그 명칭 아래는 여전히 여러 개체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만 고유명사를 판별하게 되면 일반인이 고유명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많은 동식물명이 보통명사로 판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유성과 하위개념을 가지지 않는 두 가지 원칙에 모두 적합해야만 고유명사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고유명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성’에 해당되는 용어는 대부분 고유명사에 속한다. ‘어휘성’은 국어의 문법에 맞지 않고,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외래어들을 고유명사로 판별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한국과학기술원 1995, 59-63). 즉, 고유어가 한자어

또는 외래어와 공존할 때 고유어(한자어)는 보통명사로 외래어는 고유명사로 판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예부흥, 공산주의, 국방성' 등이 보통명사라면 '르네상스, 레닌주의, 펜타곤' 같은 고유명사이다.

둘째, 고유명사를 포함하고 있어도 복합어는 대부분 고유명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미국'은 고유명사이지만, '아메리카인, 미국사람'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사람'은 '미국'이라는 고유명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람 중에 '미국사람'을 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일의 법칙', '알래스카 해류'처럼 복합어라도 한정의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다른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 특별히 붙인 이름은 고유명사이다.

셋째, 외국어로의 번역시 주로 번역어 없이 로마자 번자표기를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고유명사이다. 고유명사는 원칙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차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화의 'Ewha', 연세의 'Yonsei', 서울의 'Seoul' 등이 있다. 그러나 번역하지 않고 차음하여 쓴다고 해서 모두 고유명사인 것은 아니다. '김치'는 비록 한국의 고유의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로마자로 표기할 때 'kimchi'로 번자되는 단어이지만, 고유성에 근거하여 하위에 여러 김치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명사가 된다.

넷째, 구문론적으로 '이, 그, 저, 세' 등의 지시관형사나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기 어렵고, 복수접미사 '-들'이 결합하지 못하는 용어는 대부분 고유명사이다. 왜냐하면, '이 김철수', '저 김철수', '김철수들'이라고 지시관형사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대상 중 하나를 지시하기 위해서인데 고유명사는 그 대상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형사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고유명사의 분류

고유명사를 분류하는 일은 고유명사의 범주를 명확

하게 하는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자인(1999)는 고유명사를 5가지로 분류하였고, Abate(1994)는 22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1995, 59-63)은 크게 전형적 고유명사와 확대 고유명사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아래 6가지로 세분류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분류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주관하는 21세기 세종계획의 고유명사 전자사전구축을 위해 만든 분류표(문화관광부 1999)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원래 이 분류표는 크게 인간관련 범주, 사건 또는 행위, 물질적 산물, 정신적 산물, 자연상관물, 기타 범주의 6대 범주로 나누고 있었으나, 하위개념의 존재여부 때문에 고유명사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외한 동식물명은 분명한 고유성을 지닌 이름이므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분류에 추가하게 되어, 7대 범주가 되었다. 기타 항목은 인터넷주소 등과 같이 현재로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또는 차후의 전개를 위하여 설정하고 있다.

22개 소범주를 기본틀로 삼고, 조직 및 단체에 회의명, 학과 및 종파명, 물질적 산물에 캐릭터명, 정신적 산물에 표준/규격, 이론, 자연상관물에 물질명, 동식물명에 동물명, 식물명 등을 추가하여 30개로 확장하였고, 언어에서는 컴퓨터언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추가한 내용은 #을 하여 구분하였으며, 팔호 속에 일부의 예를 들었다.

*표시는 해당 대범주에 소속되기에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적어도 그 대범주와 상관성이 많은 대상이라는 점을 나타낸다(문화관광부 1998).

I. 인간 및 인간 집단

1) 인간 및 신

① 인간

② *신(神)(제우스, 아프로디테, 조왕신)

2) 조직 및 단체

20 제8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③ 조직 및 단체 - 국제기구, 국가, 연구소, 방송국, 도서관(경실연, 한총련)
- ④ *왕조(튜더왕조, 조선왕조)
- ⑤ *종족(피그미족, 마오리족, 마시이족, 코카서스인종, 흥노족, 에스키모)
- #⑥ *학파 및 종파(청록파, 장로교)
- #⑦ *회의명

II. 사건 또는 행위

- ⑧ 사건 - 각종의 전쟁, 혁명, 쿠데타, 민중항쟁, 민란(아관파천, 갑신정변, 6.29선언)
- ⑨ 회담, 조약 및 협정(얄타회담, 강화도조약, 얈타협정)
- ⑩ *국경일 및 기념일(삼일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 ⑪ *상(賞)(노벨상, 아카데미상, 플리처상)
- ⑫ *행사(칸느영화제, 광주비엔나레, 대전엑스포, 강릉단오제, 서울올림픽)

III. 물질적 산물

- ⑬ 기구(器具)(신문고, 자격루, 아폴로11호)
- ⑭ 상품 - 식품, 의류, 피혁제품, 전자제품, 가구, 장신구, 화학제품 등의 명칭
- ⑮ 교통수단 - 자동차(포드, 소나타), 기차(통일호), 선박(카페리호), 항공기 명칭
- ⑯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물: 운동장, 성, 궁, 아파트, 정자
 - 시설물: 공단, 놀이동산, 교통시설, 정원
- ⑰ *문명(마야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 #⑲ *캐릭터 및 이미지

IV. 정신적 산물

- ⑲ 예술 - 각 장르의 예술 작품명
- ⑳ 방송(프로그램) - (추적 60분, 시사매거진

- 2580, 토요일 토요일 밤에, 일요스페셜)
- ㉑ 출판물 - 도서, 신문, 잡지, 지도 등
- ㉒ *언어(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C언어, 베이직, 코볼)
- #㉓ 표준/규격(IEEE 488, ISO2788)
- #㉔ 이론(BCS 이론, 상대성이론)

V. 자연상관물

- ㉕ 지리 - 도시, 대륙, 해양, 하천, 산, 산맥, 봉우리, 고개, 고원, 사막, 분지, 초원, 폭포, 호수, 삼각주, 반도, 곶(串), 만(灣), 해협, 항포구, 섬, 굴, 바위, 온천, 탄광, 광산, 공원 등(주로 자연물임)
- ㉖ 자연현상 - 해류(쿠로시오해류), 태풍(사라호, 셀마호), 기단(오호츠크해 기단)
- #㉗ 물질명 - 무생물을 포함한 각종 물질명
- ㉘ 천문 - 별자리(카시오페이아자리, 페가수스, 처녀자, 천칭자, 쌍둥이자)

VI. 동식물명

- #㉙ 동물명
- #㉚ 식물명

VII. 기타 - 인터넷주소 등

(위의 소범주들 어디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고유명 사들은 '기타'로 분류한다.)

4 고유명사의 처리

문헌의 색인과 검색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고유명사의 범주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의 정의에 따라 그 어휘가 고유명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유명사로 다루어 이점이 없거나 혹은 고유명사로 구별함으

로써 오히려 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보통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처리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용어관계(계층, 관련 등의 관계)를 나타내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리명에서 ‘한국, 서울, 서대문구’는 모두 고유한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들이다. 그래서 이 대상들을 모두 별개로 다루게 되면, ‘한국 내의 서울, 서울 내의 서대문구’라는 중요한 정보를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즉, 고유명사이지만, 계층관계가 가능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고유명사들은 보통명사로 취급하여 처리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색인 및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고유명사로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하면 대상이 유일하고, 계층 및 관련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간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고유명사 분류 중에서 고유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장점이 큰 항목과 보통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장점이 큰 항목을 구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통명사로 처리시 장점이 많은 항목은, ② 신, ④ 왕조, ⑤ 종족, ⑥ 학파 및 종파, ⑧ 사건, ⑨ 회담, 조약 및 협정, ⑩ 국경일 및 기념일, ⑪ 상(賞), ⑫ 행사, ⑬ 기구, ⑯ 교통수단, ⑰ 문명, ⑪ 언어, ⑭ 이론, ⑮ 지리, ⑯ 자연현상, ⑰ 물질명, ⑱ 천문-별자리, ⑲ 동물명, ⑳ 식물명이다.

실제적으로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통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항목이 더 많다. 이는 고유명사로 처리하는 것에 분명한 이점이 없다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 그 개념상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통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건명인 ‘갑신 정변’의 경우, 고유명사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치, 한국정치, 개화’ 등의 정보와 계층 혹은 관련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고유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항목은, ① 인명, ⑦ 회의명, ⑭ 상품명, ⑯ 건축물 및 시설물, ⑰ 캐릭터 및 이미지명 ⑲ 예술작품명, ⑳ 방송프로그램명, ㉑ 출판물명, ㉓ 표준/규격이 있다. 예를 들면, 인명을 보통명사로 취급하면 ‘과학자’ 아래 모든 과학자명이 와야 하지만, 각각 개별의 고유명사로 처리하면 개별 과학자명으로만 처리하면 되므로, 고유명사로 취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하겠다. 필요에 따라 이 부류에 속하는 대상에 대하여 전거데이터를 만들어 별도로 처리할 수도 있다.

동식물명이나 물질명은 그 하위개념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사리’는 고사리과에 속하는 최하위개념이며, 같은 과에 속하는 ‘고비고사리’는 ‘고사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동식물명이나 물질명은 그 계층분류가 명확하여 쉽게 시소스의 계층구조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고유명사보다는 일반명사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호했던 고유명사의 범주를 분명히하기 위해 고유명사의 개념과 판별기준, 분류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분류 7개, 소분류 29개인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고유명사의 범주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에서 색인 및 검색어로서 고유명사를 처리할 때 고유명사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장점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을 구분하였다.

이는 처리의 효율과 관계된 문제로 고유명사라는 대상을 분석하는 국어학적 관점과 문헌정보학적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
동아.
- 김문오. 2000. 전문용어와 고유명사의 상관관계. 『제3
회 전문용어언어공학심포지움』, 3: 78-90.
- 문화관광부. 1998-1999. 『연구보고서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 서울: 문화관광부.
- 이관규. 1999. 『학교문법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장자인. 1999. 『HMM기반으로 한 고유명사의 인식 및
분류』.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현정
보학과.
- 한국과학기술원. 1995. 『지능형정보검색에 관한 연구』.
- Abate, Frank R. 1994. *Proper Name Master Index*.
Detroit, Mich.: Omnigraphics.